#### 2024년 6월 14일

# 보도참고자료

이 자료는 6.16(일) 12:00부터 취급 가능

#### 제 목: 제2024-2차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총회 개최

- 서울 외환시장의 원/달러 거래시간 연장(7.1일 시행) 등 의결

- □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(이하 "외시협")는 '24.6.14일(금) 제2024-2차 총회를 개최하여 ① 원/달러 거래시간 연장 및 ② 전자거래규약 일부 폐지 의결
  - ① 「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」을 개정하여 '24.7.1일(월)부터 **중개회사를 통한 원/달러 외환거래 시간**을 **익일 새벽 2시**까지로 **연장** 결정<sup>\*</sup>
    - \* (현행) 오전 09:00 ~ 오후 03:30 → (변경) 오전 09:00 ~ 익일 오전 02:00. 단, 원화-이종통화간 거래시간은 현행 유지
    - 이는「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」의 3大 정책과제 중 하나로,
       동 조치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편의 제고 및 거래비용
       절감 등이 기대\*
      - \* 우리나라와 시간대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,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등이 원하는 시간에 원화를 거래하고, 역외NDF 대비 낮은 거래 비용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음
  - ② 전자거래 규약(API Rulebook, '23.12.21일(목) 도입) 중 **"개장직후·장 마감전 각각 15분간 API 적용 중단**\*" **폐지** 결정
    - \* '21.12월 대고객 전자거래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, 전자거래 규약 도입시 동 조항의 "7월 정식시행 전 폐지 여부를 검토"하기로 결정
    - API로만 거래하는 RFI들은 동 규약 적용시 총 30분간 거래가 불가능한 점, 원활한 외환거래 환경 조성 필요성 등을 감안
- □ **현물환증개회사**는 원/달러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**09시~익일 02시** 동안 **매시 정각**과 **15:30분**의 **시점환율** 및 **TWAP**\*을 제공 예정
  - \* 시간가중평균환율(<u>Time Weighted Average Price</u>): 각 현물환중개회사에서 산출 시점 직전 10분부터 매 10초 간격으로 체결된 가격(환율)을 단순평균하여 산출

- 시가고가종가저가 환율은 09시~익일 02시 기준으로 제공하고,
   現 종가환율\* 및 매매기준율(MAR)은 현재와 동일 기준을 유지
  - \* 개장시간 연장 이후 '서울 15:30분 환율(Seoul 15:30 Closing Spot Rate)'로 명칭을 변경하고, 외환당국은 동 환율을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(통계, 보도자료 등)할 계획
- 익일 02시 환율은 '서울 02:00분 환율(Seoul 02:00 Closing Spot Rate)'로 명명 예정

### <u>개장시간 연장 이후 환율정보 제공 계획</u>

	현 행	7월 이후
시점환 <del>율</del>	▶ 09~15시중 매시 정각 및 15:30분	▶ 09~ <b>02시중</b> 매시 정각 및 15:30분
종가환 <del>율</del>	▶ 15:30분	▶ 좌동
평균환율	▶ 매매기준율(MAR, 09시~15:30분)	▶ 좌동
	·시간대별 평균환율은 없음	▶ 09~ <b>02시중</b> 매시 정각 및 15:30분 직전 10분간 거래된 시간가중평균 환율(TWAP)

주: 종가 및 매매기준율 산출시간의 경우, 개장시간 연장 이후에 15:30~16:00 동안의 거래가 크게 증가할 경우 30분 조정을 검토

□ 외시협은 **서울 외환시장 참여자**들이 「외환시장 구조 개선」으로 **변화된 외환거래 환경**에서 **안정적으로 거래**할 수 있도록 **적극 노력할 계획**임

붙임1.: 「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」개정(안) 전·후 대비표

문의처 : 우리은행 외환시장운용부 팀 장 나지영 Tel: (02) 2002-4121

한국자금중개(주) 외환시장부 부 장 강원태 Tel: (02) 3706-8357 한국자금중개(주) 외환전자중개부 부 장 이성준 Tel: (02) 3706-8449

### 서 울 외 환 시 장 운 영 협 의 회

## 「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」개정(안) 전·후 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고
제IV장 거래절차에 관한 시장관행	제IV장 거래절차에 관한 시장관행	
제 38 조 거래시간	제 38 조 거래시간	
1. (생략) 2. (생략)	1.~ 2. (현행과 같음)	
		문구 수정
(신설)	부 칙(2024. 6. 14.)  제1조 시행일  이 규범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	항목 신설